

# LIG 넥스원(주) 기업지배구조현장

# 전문

LIG 넥스원 (이하 ‘회사’)은 개방과 긍정의 핵심가치로 주주,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를 디자인하는 첨단 기술기업으로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또한 회사는 주주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행복과 신뢰를 주고, 회사의 발전과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한다.

이에 “LIG 넥스원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주주가치, 이해관계자 권리보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추구하고자 한다.

## 제 1 장 주주

### 제 1 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법령과 규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이익 분배에 참여할 권리,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권리 등을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 ②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2 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보통주 1 주마다 1 의결권을 가지며,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② 주주는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자기거래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제 3 조 (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 제 2 장 이사회

### 제 4 조 (이사의 기능)

①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령과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이 정하는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또는 산하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5 조 (이사의 구성 및 운영)

① 이사회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논의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이사회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 6 조 (이사의 자격)

- ① 이사는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정신, 정직성을 가지며,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합리적인 판단력과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

### 제 7 조 (이사의 의무와 책임)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주의 이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무상 얻어진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
- ② 이사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 3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③ 이사가 충분한 검토와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는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 8 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적정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에 따른다.

### 제 9 조 (이사의 평가 및 보상)

- ① 이사의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며, 회사는 법령에 따라 이사의 보수 등을 공시한다.
- ②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③ 이사의 보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 3 장 감사기구

### 제 10 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중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 중 1 인 이상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의 적법성,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며,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평가 등을 수행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별 1 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임원 또는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 제 11 조 (외부감사인)

- ①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 제 4 장 이해관계자 및 공시

### 제 12 조 (이해관계자)

- ① 회사는 주주, 임직원, 채권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한다.
-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 13 조 (공시)

-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공시한다.
- ② 회사는 모든 공시 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헌장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